

202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중등(일반·보건·사서)·특수·영양·전문상담·교육전문직원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중등(일반, 보건, 사서)교원

제1장 총 칙	3
제2장 채 용	4
제3장 승 진	5
제4장 전 직	6
제5장 전 보	7
제6장 교 류	19
부 칙	21
<별표 1-1> 급지별 중학교/교육지원청 명단	35
<별표 1-2> 급지별 고등학교/특수학교 명단	36
<별표 2-1> 근무경력점 평정 기준표	37
<별표 2-2> 근무경력점 평정 기준표	38
<별표 3> 교육활동경력점 평정 기준표	39
<별표 4> 가산점 평정 기준표	40

특수교사

제1장 총 칙	42
제2장 기간제 교사 임용	42
제3장 전 직	42
제4장 전 보	43
부 칙	45

영양교사

제1장 총 칙	52
제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53
제3장 전 보	54
제4장 국·공립학교간 및 시·도간의 교류	57
부 칙	58

전문상담교사

제1장 총 칙	67
제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67
제3장 전보	68
제4장 국·공립학교간 및 시·도간의 교류	69
부 칙	73

교육전문직원

제1장 총 칙	78
제2장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78
제3장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81
제4장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81
부 칙	83



중등(일반, 보건, 사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함) 중등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규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원 배정)

- ① 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사 정원은 학교급과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정원을 산출 배정한다. <개정 2014.3.1.>
- ② 각 학교의 과목별 정원은 해당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산출한다. <개정 2014.3.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정원을 증배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시범학교 등)
 2.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 중점 육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 방송통신 중학교가 설치된 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정 2011.3.1, 2014.3.1.>
 3. 생활관 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직업훈련소 또는 공동실습소가 있는 학교
 4.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는 학교
 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배치학교<신설 2016.5.25.> <개정 2021.7.12.>
- ④ 1년 이상 장기 휴직 교사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4.3.1.>

제4조(교원의 배치)

- ① 신설학교에는 신규교사를 1/2 이상 배치할 수 없다.
- ② 교원 인사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학교별 정기전보 이전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0.3.1.>
- ③ 수석교사는 학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단, 5학급 미만,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 ⑤ 여자학교의 교장, 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한다.
- 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원로교사는 가급적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3.1.>

제5조(교원의 겸임)

- 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담당교사가 미배치된 과목이나 평균 이상으로 수업시수가 너무 많은 과목에 한하여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②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급별 평균 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사가 겸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 ③ 신설학교에는 개학 준비에 필요한 겸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 ④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겸임은 별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3.1.>

제6조(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교사, 교감의 중학교 배치와 영양교사의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배치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행한다. 단, 도서벽지 학교 희망자의 전보는 관내로 새로 전입하는 교원과 관내전보 희망 교원을 통합하여 작성한 서열명부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개정 2022.7.11.>

제2장 채 용

제7조(신규 채용)

- ① 신규채용 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하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 ②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과목별 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③ 신규 임용 교사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근거지에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신규 임용 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거나, 학기 도중에 임용할 경우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①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①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 심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폐교(공립으로 설립자가 변경된 사립학교 포함)·폐과·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2. 공립학교에 결원이 있으나 해당 과목의 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3. 교육전문직원 등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은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9조(기간제 교사의 채용)

- ① 교사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담당과목과 상응하는 교원자격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후 1주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

제10조의1(승진)

- ①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인 자
 2. 여성 승진 후보자
 3. 승진 후보자명부에 기 등재된 자
- ② 교장은 교감에서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원에서의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 ③ 교감은 교사에서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원에서의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 ④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승진 임용(제청)을 위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의2(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 ① 교과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를 교과별로 선발한다. (2017.3.31.작성하는 명부부터 적용)
- ② 교과 분류 및 인원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별 교사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③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0.7.13.>
- ④ 교감 자격을 위한 직무연수 성적 3개 중 교육감이 지정한 경남교육정책연수 1개 필수 <신설 2021.7.12.>

제4장 전 직

제11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 ① 교원 수급에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단, 현직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2.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근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자 <개정 2015.1.28.><개정 2024.7.8.>
 3.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4.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을 위한 전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5. <삭제 2015.1.28.>
 6. <삭제 2015.1.28.>
- ③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0.7.13.>



제12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되,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전직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전직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장 전 보

제13조(전보의 시기)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석교사, 교사 정기전보는 3월 1일로 한다. <개정 2014.3.1.>

제14조(인사지역, 인사구역 및 인사금지)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결원, 증원 등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전보는 전보서열명부에 의하여 가급적 희망 근무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하며,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전보 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인사지역(이하 '지역'이라 함), 인사구역(이하 '구역'이라 함) 및 인사금지(이하 '금지'라 함)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7.7.10.>

구역	지역 및 학교
갑	• 진주 : 진주시 소재 학교 • 창원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소재 학교
을	• 마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소재 학교 • 진해 :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학교 • 김해 : 김해시 소재 학교
병	• 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그 지역 소재 학교

① 지역은 전보 선택 단위이며, 20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

② 구역은 갑, 을, 병으로 분류하여 근무연한을 관리한다. <개정 2014.3.1.>

③ 금지는 가부터 사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근무경력점을 평정한다. <별표1-1>, <별표1-2>



제15조(교사 근무연한 등)

- ① 학교 근무연한은 5년으로 하고, 도서벽지 및 준벽지 학교 근무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2013.3.1. 준벽지 학교 전입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
- ② 갑구역 동일지역의 급지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1. 가급지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나급지 연한과 가, 나급지 통산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 ③ 을구역의 동일지역 근무연한은 10년으로 한다.
- ④ 병구역의 동일지역 근무연한은 12년으로 한다.
 1. 창원진해(병), 김해(병)구역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3.1.>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는 근무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2.7.11.>
 3. 거제지역은 근무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0.>

제16조(교사 전보)

- ① 일반, 전과, 타 시·도교육청 전입, 공립전환(사립특채), 신규임용 순으로 전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3.1.>
- ② 현임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학교장(고) 또는 교육장(중)의 내신으로 전보한다. (2025.3.1.자 전입자부터 적용) <개정 2023.7.10.>
- ③ 갑구역의 경우, 급지만기 1년 이전에는 동일지역 다른 급지로 전보할 수 있으나, 급지만기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 ④ 도서벽지 학교 만기자는 관외로 전보하고, 도서벽지학교 만기전에 동일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관외전보서열명부에 의해 동일지역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7.7.10.>
- ⑤ 준벽지 및 도서벽지 학교, 특수학교의 근무와 전보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23.>
 1. 도서벽지 학교 또는 준벽지 학교에는 3년간 근무할 수 있다. 단, 준벽지학교 지정 이전 전입자, 폐교 또는 해지로 인한 경우는 통산 3년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 준벽지 학교 경력자(근무자)는 도서벽지 학교로, 도서벽지 학교 경력자(근무자)는 준벽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4.3.1.>
 3. 도서벽지 학교 경력자(근무자)는 특수학교로, 특수학교 경력자(근무자)는 도서벽지 학교로 전직(전보)할 수 없다.
- ⑥ 정원 감축 대상 교사 선정은 중학교는 교육장이 가급적 관내 장기 근무자 순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내신자 중 현임교 장기 근무자 순으로 선정하고, 현임교 2년 이하 근무자는 억제한다. <개정 2019.7.8.> <개정 2021.7.12.> <개정 2025.6.23.>

- ⑦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전보는 희망 지역의 학교급별 전보서열에 따른다.
- ⑧ 고등학교 교사가 동일지역 다른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역 우선 전보를 실시한다.
- ⑨ 고등학교 학교만기 교사가 제1희망지를 다른 지역으로 희망한 경우에는 지역 우선 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⑩ 기술, 가정, 기술·가정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보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가 기술과 교사로 또는 기술과 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해당교과 정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과계획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 일반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기술·가정과 교사는 각각 해당과목으로 전보하고, 교육청의 정원관리에 차질이 있을 경우, 서로 교차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1.> <개정 2020.7.13.>
 3. 일반고등학교의 기술·가정과를 담당하는 전문교과 교사 중 기술, 가정, 기술·가정 부전공 자격이 없는 교사는 전보 희망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해당 전공교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과계획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 <개정 2014.3.1.>
 4. 중학교의 기술, 가정, 기술·가정은 통합하여 전보한다. <신설 2010.3.1.>
- ⑪ 부전공 연수로 취득한 자격의 과목으로 전과한 자는 중학교에 전보한다. 단, 교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⑫ 국가유공보훈대상 교사는 연고지에 전보되도록 고려한다.
- ⑬ 청렴도 부족, 학부모 여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하급지로 전보한다.
- ⑭ 중학교의 윤리·도덕교사, 사회(역사포함)교사는 각각 해당과목으로 우선 전보하고, 교육청의 정원관리에 차질이 있을 경우, 서로 교차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7.8.>
- ⑮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일교에 전보하지 않는다. 단, 현재 동일교에 근무중인 자는 이를 해소하도록 전보하며, 평정기간은 제18조 ⑤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3.>
 1. 배우자나 직계혈족 관계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 <개정 2021.7.12.>
 2.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확정된 학교 <신설 2019.7.8.> <개정 2020.7.13.>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경우 침해학생이 전학 또는 진학한 학교(단, 피해교원이 '동일교 미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7.12.>
 4. 학생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교 <신설 2021.7.12.>



5. 학생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교(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7.12.>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 <신설 2026.6.25.>
- ⑯ 신설학교 개학 준비를 위한 겸임발령 교원은 해당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17조(교사 전보서열명부)

교사의 전보는 대상자별로 근무경력점, 교육활동경력점, 가산점을 평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과목별, 중고별, 지역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3.1.> <개정 2017.7.10.>

제18조(교사 평정기간)

- ① 평정기간은 현임교에서 근무한 최근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휴직(공상 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및 파견 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된 교사는 기간 만료로 복귀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본인이 전보를 희망하면 파견 기간을 평정기간에 포함한다. 단, 2016.3.1. 파견자부터 교육기관에 파견된 근무자는 도서벽지 및 준벽지로 전보희망 시는 파견기간을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제외된 휴직 또는 파견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전의 기간을 평정기간에 포함한다.
- 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의 평정기간은 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1. 정원 감축, 전과(과목변경자), 폐과 또는 폐교로 인한 전보 대상자. 단, 준벽지 또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자는 3호에 준하고, 지역 만기자는 제외 <개정 2021.7.12.>
 2. 병구역 학교 만기자가 갑구역 전보를 희망하였으나, 병구역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이듬해(육아휴직으로 이듬해 전출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복직 후)에 다시 갑구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단, 제1희망지에 한함
 3. 준벽지 또는 도서벽지 학교 만기자 <개정 2016.3.1.부터 준벽지 또는 도서벽지 학교 만기자는 전임교의 경력부가점은 인정하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초빙교사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4.3.1. 시행세칙반영> <삭제 2016.3.1.>
 5. 제16조제15항 1호~6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7.11.> <개정 2026.6.25.>
- ⑥ 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평정하고,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5일 이상은 1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제19조(교사 근무경력점 평정)

- ① 평정 대상은 평정기간에서 최근 3년 이내로 한다.
- ② 평정 방법은 경력기간에 따라 급지별로 매년 가는 4, 나 4.5, 다 5, 라 5.5, 마 6, 바 6.5, 사 7점으로 환산한다. <별표2-1>, <별표2-2>

제20조(교사 교육활동경력점 평정)

- ① 교육활동경력점의 평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② 교육활동경력점 중 근무경력부가점의 평정 대상은 평정기간에서 최근 1년 초과 5년 까지 4년 이내로 한다. (2027.3.1.자 전보신청자부터 적용) <개정 2023.7.10.>
- ③ 근무경력부가점의 평정 방법은 급지와 관계없이 최근 1년 초과 연1점, 최근 2년 초과 연2점, 최근 3년 초과 연3점, 최근 4년 초과 연3점으로 환산한다. (2027.3.1.자 전보신청자부터 적용) <개정 2023.7.10.>

근무경력	2년	3년	4년	5년
부가점	1점	3점	6점	9점

- ④ 갑구역 현임교 5년 미만 근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고, 갑구역 전임교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근무경력부가점을 평정한다. <개정 2022.7.11.> (단, 2027.3.1.자 전보신청자 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5.>

제21조(교사 가산점 평정)

- ① 가산점 평정 기준은 <별표4>와 같다.
- ② 평정 방법은 평정기간에 거둔 실적이나 사실만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4.3.1.>
- ③ 표창, 상장, 자격증, 인증서는 내신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현재내신에 평정하고, 익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전보된 학교에서 차기내신에 평정한다.

제22조(교사 근무성적 평정)

- ① 근무성적은 평정기간에서 최근 1년간 평정한 근무성적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최근 평정 연도는 다를 수 있다.

제23조(교사 동점자 순위)

서열명부 작성에서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제24조(교사 특별내신)

- ① 장학협의를 결과 장기근무가 침체 요인이 된다고 인정된 자나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전보한다.
- ② 학교 경영상 부득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내신이 있는 자는 전보 조치할 수 있다.
- ③ ‘교사 특별내신’ 대상자 중에 본인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소위원회는 인사권자 소속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신설 2019.7.8.>

제25조(교사 초빙)

- ① 학교는 교과교사만 초빙할 수 있다.
- ② 초빙교사 임용 요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초빙 비율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2.7.11.>
- ④ 초빙된 총교사수가 규정된 초빙 비율에 도달하면 초빙할 수 없다.
- ⑤ 초빙되는 교사는 현임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
- ⑥ 징계에 따른 특별내신 대상자는 초빙될 수 없고, 지역만기자는 그 지역에 초빙될 수 없다.
- ⑦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은 지역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초빙교사의 의무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의무 근무기간 중에 전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1.>
- ⑨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1차에 한하여 현임교에 절차에 따라 다시 초빙할 수 있다. <삭제 2016.5.25.>
- ⑩ 현임교에 다시 초빙되지 않은 교사는 일반교사로 계속 근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 ⑪ 초빙교사 1차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는 과목은 초빙을 취소한다.
- ⑫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하는 교사는 여러 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신설 2010.3.1.>
- ⑬ 초빙교사로 확정되거나 초빙교사 의무기간 중에 있는 자는 파견근무 지원을 할 수 없다. (2016.3.1.부터 적용)
- ⑭ 초빙교사의 대상은 관내 교사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에 동급의 공립학교가 2개교



미만인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26조(교사 전보특례)

- 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 학생안전체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특수교육원 및 예술교육원 해봄에 파견되어 2년간 성실히 근무한 파견교사는 본인의 희망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복귀 연도에 한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 학교와 준벽지 학교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개정 2020.7.13.> <개정 2021.7.12.> <개정 2022.7.11.> <개정 2024.7.8.>
- ②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생 지도교사로서 현임교(실적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본인의 희망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경합이 될 경우에는 입상횟수, 입상등위 순으로 한다.
- ③ 특수영역 지도능력 보유교사는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요건을 갖추고, 학교장이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특수영역은 합주(취주악), 수화, 국악, 체육영재육성종목(체육고등학교 외), 무용, 영어(영어작문, 영어회화) 중 어느 하나 <개정 2014.10.15.>
 2. 추천되는 교사는 해당 지역 전보 내신 대상자
 3. 체육영재육성종목 해당자(체육고등학교 외)는 선수 출신이거나,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입상 학생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4.10.15.>
 4. 무용, 영어 해당자는 희망하는 일반고등학교에 해당 영역이 집중이수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 ④ 다음 학교 및 교과에 한하여, 현임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복수로 추천하면,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전보특례로 전입된 교사의 의무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의무 근무기간 중에 전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남온라인학교의 경우 의무기관 중 2년 연속하여 교과 신청자가 없어 교과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의무 근무기간 중이라도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19.11.20.> <개정 2020.7.13.> <개정 2025.6.23.>
 1. 특성화고: 전문교과
 2.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고): 전문교과
 3. 특목고(과학고): 전교과 <개정 2014.3.1.>
 4. 특목고(외국어고): 전교과
 5. 특목고(체육고): 체육교과(단, 해당종목 선수 출신인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



- 대회, 전국규모대회 입상학생 지도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4.10.15.>
6. 대안계열 특성화고(태봉고): 전교과, 전문상담교사
 각종학교(경남온라인학교 포함): 전교과, 전문상담교사 <개정 2022.7.11.> <개정 2023.7.10.>
7. 자율형 공립고: 전교과 <삭제 2015.2.28.>
- ⑤ 경남과학고와 창원과학고 간의 상호 전보특례(초빙 포함)를 허용한다. 단, 과학고와 김해외국어고 간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1.> <개정 2012.3.1.>
- ⑥ 다음 각 호의 과목 교사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중·고 통합학교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과목 교사
 2.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과목(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 교사
- ⑦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는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희망 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간호하는 교사는 읍, 병구역에 한하여 전입교사의 2배수 범위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개정 2014.10.15.> <개정 2019.7.8.>
- ⑧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경우, 신고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⑨ 전국체육대회 입상(금, 은, 동) 실적이 없는 경남체육고 체육교사는 지역 우선 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⑩ 전보특례에 지원하는 교사는 여러 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신설 2022.7.11.>

제27조(교사 전보유예)

- ① 유예 인원은 초빙교사의 초빙 비율에 포함한다. <삭제 2022.7.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유예를 신청한 교사는 임용권자의 승인으로 1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3호와 5호는 3년간 6호는 2년간 유예 가능 <개정 2019.7.8.> <개정 2021.7.12.>
1.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면서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2. 근무성적이 미 이상이면서 정기전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년퇴직 해당자(지역 만기자도 포함)
 3. 행복나눔학교 및 행복학교 운영상 필요한 핵심 교사(2명 이내) <개정 2019.7.8.>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지닌 교원 <신설 2016.5.25.> <개정 2021.7.12.>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운영상 필요한 핵심 교사(1명)
〈신설 2021.7.12.〉
6.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교사(1명) 〈신설 2021.7.12.〉
7.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를 둔 교원 〈신설 2024.7.8.〉
- ③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에 특별히 필요하여 학교장이 유예를 신청한 전문교과교사는 임용권자의 승인으로 1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아래 제4항 제2호와 중복 적용 불가)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유예를 신청한 교사는 임용권자의 승인으로 해마다 1년씩 최대 3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2011.3.1.),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고) 전문교과 교사(2019.3.1.), 및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개설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개정 2026.6.25.〉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 지도교사
 3. 전국소년체육대회(중)나 전국체육대회(고)에 경남대표선수를 지도하고 교기 연계육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체육교사 〈개정 2010.3.1.〉
 4. 경남체육고에서 당해 전국체육대회 입상 학생을 지도한 체육교사(단, 당해 학년도 금메달 획득 학생을 지도한 체육교사는 해마다 1년씩 최대 2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3.1.〉
 5. 대안학교(태봉고, 꿈키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 〈신설 2010.3.1.〉 〈개정 2014.3.1.〉
대안학교(경남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 〈신설 2017.7.10.〉
대안학교(창원예술학교, 남해보물섬고, 거창연극고, 김해금곡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 〈신설 2022.7.11.〉
각종학교(경남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 〈신설 2023.7.10.〉
 6. 김해외국어고의 외국어과,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와 진로진학상담 교사 〈개정 2014.3.1.〉
 7. 창원과학고의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외국어과, 환경과, 정보·컴퓨터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와 진로진학상담 교사 〈신설 2011.3.1.〉 〈개정 2012.3.1.〉 〈개정 2021.7.12.〉
- ⑤ 경남과학고의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외국어과, 정보·컴퓨터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여(진로진학상담 교사 포함) 학교장이 유예를 신청한 교사는 임용권자의



- 승인으로 해마다 1년씩 최대 5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3.1.> <개정2014.3.1.>
- ⑥ 과목 특성으로 타인과 교체가 불가능한 자는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1.>
- ⑦ 중학교(준벽지 학교 포함)의 학교 만기자가 관내 전보 상대자가 없어서 관내에 전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 유예하고, 이듬해에도 관내전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관외로 전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 <개정 2020.7.13.>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만기를 1년간 전보 유예할 수 있다.
1.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교사(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1.7.12.>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병구역에 한함) <개정 2021.7.12.>
 3.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를 둔 교원 <신설 2024.7.8.>
 4. 한부모 양육자(신설 2025.6.23.)

제28조(수석교사 전보)

- ① 수석교사는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지역 및 학교간 전보는 수석교사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② 수석교사의 인사 지역, 구역, 급지 및 지역 근무연한은 제14조 및 15조에 준하며, 학교 근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③ 수석교사 임용 이전 경력은 지역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수석교사 임용 이후 경력은 학교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 ④ 가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
- ⑤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임용기간 만료자, 재임용탈락자), 동일지역 다른 학교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
- ⑥ 수석교사 임용 기간 중 중도 포기자는 하구역으로 전보한다.(단, 병구역은 하급지로 전보한다.)
- ⑦ 정기전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년퇴직자 해당자(지역만기자 포함)의 경우 학교장이 유예를 신청한 수석교사는 임용권자의 승인으로 1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제29조(수석교사 전보서열명부)

- ① 수석교사 전보는 근무경력점과 업적평가점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희망지역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 ② 근무경력점은 현임교 수석교사 최근 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급지에 따라 산출한다.



- ③ 근무경력부가점의 평정 방법은 급지와 관계없이 최근 1년 초과 연1점, 최근 2년 초과 연2점, 최근 3년 초과 연3점, 최근 4년 초과 연3점으로 환산한다. (2027.3.1. 자 전보 신청자부터 적용) <신설 2026.6.25.>
- ④ 업적평가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최근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⑤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서열을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지역 경력점 상위자
 3. 업적평가점 상위자
 4.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30조(교장, 교감 전보)

- ① 교장, 교감의 전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장학지도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교장, 교감은 동일교 근속 1.06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한다. (2025.3.1.자 전입자부터 적용) <개정 2023.7.10.>
- ② 교장(교감)의 학교 근무연한은 4년(5년)으로 한다. 단, 2013.3.1. 전입자부터 진주, 창원, 마산지역 학교 근무연한은 3년(5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 ③ 교장(교감)의 지역 근무연한은 2013.3.1. 전입자부터 진주, 창원, 마산지역은 5년(8년), 진해, 김해지역은 8년(10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 ④ 공모교장의 근무기간은 지역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1.>
- ⑤ 다음 대상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전공한 교장, 교감
 2. 전국소년체육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동계대회 포함)에서 우승한 학교의 교장, 교감
 3. 병구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정기전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년퇴직 해당자
- ⑥ 동일교 전보 제한은 제16조 ⑮항에 따른다. <신설 2020.7.13.>

제31조(교육전문직원 전보)

경남덕유학생교육원, 경남학생교육원, 남해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교육전문직원이 전직 또는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급적 우대한다. <개정 2024.7.8.>

제32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4.3.1.>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징계에 이르지 않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개정 2010.3.1.>
5.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6.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소위원회는 인사권자 소속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9.7.8.>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10.3.1.>
9.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0.7.13.>
10.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7.13.>
11.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6.25.>

② 교사의 경우 제①항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한다.

1. 승진으로 인한 경우
2. 정원의 변동이 있거나 교과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또는 직계 준·비속
4. 공인된 연구실적이 있는 자
5.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대상자에게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③ 교장, 교감의 경우 제①항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한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자
2.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개정 2010.3.1.>

④ 교육전문직원의 비정기전보는 교장, 교감의 경우를 준용한다.

⑤ 제①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갑구역의 교사는 을구역 또는 병구역으로, 을구역의 교사는 병구역으로, 병구역의 교사는 병구역의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고, 처분 사유 발생일 근무지역으로의 전보 및 처분 당시 지역으로의 전보는 처분 후 3년간



제한한다. 단, 사면된 교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시행세칙 반영>
<개정 2022.7.11.>

제33조(공립 전환 교원의 전보)

- 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학교의 교원은 매년 일정 인원수를 정하여 장기근무자부터 연차적으로 5년 내에 전보한다.
- ② 근무연수는 동일 법인의 동일 급지에서 근무한 중등학교 경력을 통산한다.

제6장 교 류

제34조(국·공립학교간 교류)

- ① 국립학교로 진출할 대상자는 교육감이 3배수를 추천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 ② 국립학교 교원의 근무연한은 진주지역 가급지 학교를 준용한다. 단, 교사의 학교 근무 연한은 8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립학교의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립학교로 전입할 수 없다. 단, 2014.3.1. 국립학교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4.3.1.>
 1.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4년 미만인 교사
 2. 국립학교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8년 미만인 교사
 3.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교감
 4. 국립학교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4년 미만인 교감
 5.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교장
- ④ 공립학교로 전입할 대상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한다.
- ⑤ 공립학교로 전입하는 교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시·도교육청간 교류)

- ① 교원의 별거고충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류할 수 있다.
 1. 동수교류 : 상대 시·도교육청과 전·출입 희망인원이 합치되는 범위에서 과목별로 교류하되, 사회교과, 과학교과, 기술교과(공업계 포함), 국어(한문)교과는 과목을 통합하여 교과 단위로 교류할 수 있다.
 2. 일방교류 : 상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정원을 이체하거나 현원만 이체하는 방식



으로 교류할 수 있다.

- ② 전출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희망 시도별(교과목별)로 전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3.1.>
 - 1. 1순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개정 2019.7.8.>
 - 2. 2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양자, 다자녀 양육자, 노부모 봉양자, 3년 이상 부부별거자. 단, 2019.3.1.자 시·도간교류 서류 제출에서 장애인 부양 1순위인 경우 2020.3.1.자 시·도간교류 인사에 한하여 1순위로 인정함 <개정 2019.7.8.>
 - 3. 3순위 : 일반 희망자
- ③ 전출 대상자의 요건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4.3.1.>
- ④ 다만,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상대 교육감이 별도의 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전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6조(교환 및 파견 근무)

- ① 교육의 지역간, 기관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동수교류 원칙으로 교환(파견) 근무 형태로 교류할 수 있다.
- ② 교환(파견) 요건 및 교환(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별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3.1.>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03.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본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생략)

제4조(200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다음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4조(정기 전보)

3.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과를 담당하는 전문교과교사 중 기술, 가정, 기술·가정 부전공과목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전보희망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 해당 전공교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본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200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다음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3조(인사구역, 인사금지 설정)

- ‘다’금지 → ‘나’금지 : 마산시(내서중, 삼계중, 호계중)
- ‘다’금지 → ‘라’금지 : 합천군(삼가중, 삼가고)
- ‘라’금지 → ‘다’금지 : 진해시(안골포중)



- ‘라’급지 → ‘마’급지 : 통영시(통영중, 통영여중, 충무중, 충무여중, 통영고, 충무고, 통영여고), 하동군(금남중, 금남고), 합천군(합천중, 합천고)
- ‘마’급지 → ‘바’급지 : 거창군(가조중, 웅양중, 가조익천고), 합천군(초계중, 초계고)
- ‘바’급지 → ‘마’급지 : 고성군(동해중), 남해군(남수중, 경남해양과학고)
- ※ 2007. 3. 1일부터 인사급지 변경 시행
- ※ 2008. 3. 1일 정기인사부터 변경된 인사급지의 경력점을 평정에 적용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본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03.01 전입자부터 적용)

1. 제18조(전보의 특례) ⑥ 통합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 편성·운영에 필요한 과목 교사 전입과 제2외국어 과목(독어, 불어, 스페인어) 자격소지자의 해당 제2외국어 과목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에 전입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의 복수 추천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 해당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제22조(전보유예 특례) 7. 경남체육고에 전입된 체육교사에 대하여는 전국체육대회의 지도 실적에 따라 매 1년씩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간
3. 제23조(서열명부 작성) ②(경력점)3호 ‘도서벽지’ 구역에 3년 이상 근무자는 전임교 경력 2년(1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점(부가점) 및 가산점을 포함한다.
4. 시행세칙 (제18조 전보의 특례) ④ 경남체육고등학교의 체육교사는 전국체육대회 입상지도실적(금, 은, 동메달)이 없는 자는 관내 우선 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30조 2순위 : 부양하는 자녀가 3인 이상 교사,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인 자 ※ 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제30조 ③항 단서조항 “다만,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전입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본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03.01 전입자부터 적용)

- ① 제13조(인사구역, 인사급지 설정) 양산시 웅상읍 분동 후 농어촌 가산점 부여 여부는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2007.5.15, 대통령령 제20068호) 경상남도교육 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공포되기 전까지 유보
- ② 제13조(인사구역, 인사급지 설정) 신설학교
[삼정자중, 개양중-‘가’급지], [봉명중, 김해삼방고-‘다’급지], [서창고-‘마’급지]

부 칙

(2008. 02. 28. 인사위-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 ① 제3장 10조 ①항 3호(승진후보자 명부 기등재자)의 시행세칙 : 공립교원 교감 수급 계획에 의한 교감 자격 취득자는 교감승진후보자명부 선등재자일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단 국·사립 교감수급계획에 의한 교감 자격 취득자는 정년 잔여 5년 이내인 경우,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제청)할 수 있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 ① 제13조(인사구역, 인사급지 설정) 신설학교 추가 : 창원도계중(가급지), 창원동중(나급지), 진해용원중, 김해활천중(다급지)
- ② 제27조의2(교장·교감 비정기전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불문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연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6.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7.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8.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제28조의2(교육전문직 비정기전보) 제27조의 2(교장·교감 비정기전보)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할 수 있다.
- ④ 제11조(교원의 전직) ②항 2호 장학사·연구사는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⑤ 교육전문직 임용 제3조(임용 대상) ④항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교사, 중등 사립 교원으로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



부 칙

(2009. 10. 29. 인사위-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 ① 제15조(비정기전보)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10.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1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② 제27조의 2(비정기전보)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10.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③ 제13조의2(인사구역, 인사급지)

나급지 : 김해울하중, 진양고

다급지 : 함안호암중, 태봉고

라급지 : 진해 안골포중, 용원중, 의령중, 의령고, 경남은광학교

마급지 : 통영중앙중, 거제수월중
- ④ 제22조(전보유예 특례) 4. 당해연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 도대표 선수를 지도한 자로서 교기 연계 육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체육교사는 매 1년씩 3년 간
 7. 경남체육고에 전입된 체육교사에 대하여는 전국체육대회의 지도실적에 따라 매1년씩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간(단, 당해학년도 금메달 수상 지도교사는 추가하여 매 1년씩 2년 간)
 11. 교육지원청의 학교만기자가 관내 전보대상자가 없어 전보가 불가능할 때는 1년간 유예하고, 이듬해에도 관내전보가 불가할 경우 관외로 전보하여야 한다.
- ⑤ 가산점

표창 2. 교육장 표창 삭제

근무실적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가산점 인정 해당 교사(교육방송, 평생(사회)교육 지역중심학교 포함) - 삭제
2. 교육장 지정(중학교)연구·시범·실험·우수학교 가산점 인정 해당 교사(교육감지정과 중복인 경우는 택일) - 삭제
4. 겸임교사(통합 중·고의 겸임교사 포함) : 1개학교 겸임 0.5점, 2개학교 겸임 0.7점
5. 담임교사 0.3점
- ⑥ 시행세칙 2. 전보(제4조, 제20조, 제14조)
3. 도서·벽지 전입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전입된 교사는 도서·벽지 만기 시 지역만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관내중학교를 희망하는 자는 관내교육청으로 전보내신을 할 수 있으나 관내 배치 중 학교가 도서·벽지 만기자일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한다. (단, 본인 희망에 의하지 않고 도서·벽지로 전보된 자는 도서·벽지외의 학교로 관내 전보할 수 있다.)

<2012학년도 예고(안)>

관련조항	현행기준(09)	2010학년도 개정
제14조 (정기전보) ⑧	⑧ ‘갑’, ‘을’구역 고등학교의 동일지역 내 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우선 전보한다.	⑧ ‘갑’, ‘을’, ‘병’구역 고등학교의 동일 지역 내 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우선 전보한다.
제20조 (근무연한) ③ <신설>	③ <신설>	③ ‘병’구역 동일지역 내 근무연한은 근속 12년으로 한다.(단, 진해(병), 김해(병) 구역은 10년으로 한다.)

※ 본 예고(안)은 2010학년도 1년간 추가 의견 수렴을 한다.

부 칙

(2010. 11. 2. 인사위-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 ① 제18조(전보의 특례) ⑨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상호간에 전보 특례(초빙포함)에 의한 전보를 하지 못한다.



- ② 제22조(전보유예 특례) 13. 창원과학고등학교의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외국어과 교사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매 1년씩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간
- ③ 가산점 별표 5. 운동부지도교사 0.25점/1년
(당해연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출전 지도교사에 한함)
(단, 담임가산점과 중복불가,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입상유공자 가산점과 중복 불가)
- ④ 제30조(시·도간 교류) : 중등, 특수, 보건, 사서, 상담, 영양교사 모두 적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 전출희망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대상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중 한 사람이 만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2012학년도 예고(안)

순	관련조항	2010년 예고	2011년 예고(안)
13	제14조 (정기전보) ⑧,⑨ 제20조 (근무연한) ③	⑧'갑','을','병'구역 고등학교의 동 일지역 내 타 학교로 전보를 희망한 자는 우선 전보 한다. ⑨'갑','을', 고등학교 학교만기 교사 가 다른 지역(타 시·군)으로 1회망을 했으 나 전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우선 전보 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병'구역 동일지역 내 근무연한은 근 속 12년으로 한다.(단, 진해(병), 김해(병) 구역은 10년으로 한다.)	⑨'갑','을','병'구역 고등학교 학 교만기 교사가 다른 지역(타 시·군)으로 1 회망을 했으나 전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우선 전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세칙 13. 제20조(근무연한) ③ 다음(안)은 2016학년도까지만 적용함

1) 2012학년도 3월 1일자 이후 병구역 지역만기자의 전보 방법

(진해(병), 김해(병) 구역은 별도 계획에 의함)

학년도	전보 비율	비 고
2012	지역만기자의 20% 이상	소수점 이하는 절사
2013	지역만기자의 35% 이상	〃
2014	지역만기자의 50% 이상	〃
2015	지역만기자의 75% 이상	〃
2016	지역만기자 전원	〃



2) 지역만기 전보 비율에 포함되나 학교만기가 아닌 교사가 학교만기까지 유예를 희망하면 유예를 허용함 예) 2013학년도 전보 비율 35%에 포함되나 학교만기가 2015학년도이면 2015학년도까지 유예할 수 있음

3) 전보 비율 계산법

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개별 학교별로 지역만기자수 계산

나)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지역만기자 전체 숫자에 해당 비율 적용

다) 과목에 관계없이 장기근무자 순으로 적용

예) 2013학년도 지역만기자 전보대상자 수

① 지역만기자 수 10명 * 전보 비율 0.35 = 3.5명 = 3명

② 지역만기자 수 2명 * 전보 비율 0.35 = 0.7명(전보자 없음)

라) 지역만기자의 동 서열자는 다음 순서로 선순위자 결정

① 교육 경력이 적은 자, ② 생년월일이 늦은 자

4) 학년도별 지역만기자 전보 평점 총점 인정

학년도	전보 평점 총점
2012 ~ 2014	지역만기 내신자는 정원감에 해당하는 점수 인정
2015 이후	지역만기 내신자는 현임교 최근 5년간 점수

5) 진해(병), 김해(병) 구역 전보 : 2012학년도부터 지역만기자 전원 전보

학년도	전보 평점 총점
2012 ~ 2013	지역만기 내신자는 정원감에 해당하는 점수 인정
2014 이후	지역만기 내신자는 현임교 최근 5년간 점수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① 제13조(인사구역, 인사급지 설정) ①항

‘을’ 구역 : 창원시(마산), → 현행과 동일함

창원시[진해(을), 진해(병)] → 창원시[진해(을)]로 통합

김해시[김해(을), 김해(병)] → 김해시(을)로 통합

- 2012학년도 행정예고 후 2013.3.1.부터 적용한다.

- 2012.2.29.이전 김해(을), 진해(을) 전입자는 근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을 →을, 병→병 구역으로 전보를 원할 경우에는 동일 구역 우선 전보한다.

② 자율형공립고 교사 전보 시행 안내

○ 자율형공립고 지정 반대 교사에 대한 전보

- 2012학년도 전보에만 적용함

- 지정 당시 반대교사에 한하고, ‘정원감’에 해당하는 전보 가산점 인정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전보특례 시행

- 근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18조(전보특례) ④항

- 전 교과목 교사 모두 전보특례 해당함.

- 2012학년도 행정예고 후 2013학년도 전보부터 시행함.

부 칙

(2012. 10. 26. 인사위-24192호)

교육공무원 「보건교사」 인사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 인사부터 중등학교 보건교사의 전보는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전보)에 따른다.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병구역 지역만기자 전보 세칙)

교원인사과-8780(2011.12.20.)

지역	비율	학교경력	선택		가부	내신구분	평정방식 및 참고사항
거제 밀양 사천 양산 통영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내	만기	잔류(계속근무)		불가		
			이동	지역내로	불가		
				지역외로	당연	지역만기	
		만기 아님	잔류(계속근무)		가능		
			이동	지역내로	불가		
				지역외로	가능	지역만기	14.3.1.전보까지 감원 방식으로 평정 15.3.1.전보부터 현임교 경력으로 평정
	외	만기	잔류(계속근무)		불가		
			이동	지역내로	가능	학교만기	고등학교 희망자 : 지역내에 자리가 없으면, 지역외로 전보될 수도 있다.
				지역외로	가능	지역만기	
		만기 아님	잔류(계속근무)		가능		
			이동	지역내로	가능	일반내신	현임교 경력만으로 평정 단, 추후 비율이내 포함되면 잔류불가!
				지역외로	가능	지역만기	14.3.1.전보까지 감원 방식으로 평정 15.3.1.전보부터 현임교 경력으로 평정

* 연도별 절단 비율 : 2014.3.1.(50%), 2015.3.1.(75%), 2016.3.1.(전원 전보)

* 2014.3.1. 전보 대상자수 산출 방법 및 사례 : 소수는 버림

- 지역만기자 7명 * 50% = 3.5 -> 3명

- 지역만기자 1명 * 50% = 0.5 -> 0명 전보 대상자 없음

*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선정

* 중학교는 지원청별로 관내 중학교 교사를 통합하여 선정한 뒤 해당 학교에 통지

* 과목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장기근무자, 교육경력이 적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 감원 방식 평정 : 현임교 경력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경력을 가져와서 최대 5년간
경력으로 평정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 3항, 4항, 7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8. 인사위-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15. 인사위-17141호), (2015.7.20. 인사위-2015-0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5. 인사위-1863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10. 인사위-2017-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7. 인사위-2018-0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8. 인사위-2019-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0. 인사위-2019-0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2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0. 인사위-2023-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2항, 제20조 2항, 3항, 제30조 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전입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8. 인사위-2024-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인사위-2025-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25. 인사위-2026-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1> 급지별 중학교/교육지원청 명단(전보 선택 자료)

구역	지역	급지							
		가(4.0)	나(4.5)	다(5.0)	라(5.5)	마(6.0)	바(6.5)	사(7.0)	
갑	진주	나 이외교 진 주 교 육 지 원 청	반성중/금곡중(2026.2.28. 까지)/명석중/지수중/진서 중/진주교육지원청 (2024.2.29.까지) 경남꿈키움중학교/ 대곡중(2020.2.29.까지)						
	창원	나 이외교 창 원 교 육 지 원 청(창원)	창덕중/창북중/양곡중/ 창원동중/감계중/북면중						
을	마산		다 이외교 창 원 교 육 지 원 청(마산)	진전중/구산중구남분 교장					
	진해			진해중/진해여중 동진중/동진여중 석동중 진해냉천중 창원교육지원청(진해)	안골포중 용원중 진해신흥중 웅천중				
	김해		진영장등중/한얼중 진영중/김해대동중 월산중/능동중 내덕중/관동중 율하중/대청중 수남중/김해모산중 김해서중(2022.3.1.부터)	나 이외교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서중(2022.2.28.까지)					
병	거제					신현중/거제고현중 거제중앙중/거제제일중 /연초중/성포중/계룡중 수월중/거제장평중 옥포중/옥포성지중 거제교육지원청/거제상문중	하청중/동부중 지세포중(준벽지)		
	사천		사천중 사천여중	곤양중 서포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사천교육지원청			
	밀양				무안중	밀양중/밀양여중 밀양교육지원청	미리벌중(준벽지)		
	양산				양산중/삼성중 양산중앙중/신주중 범어중/물금중 금오중/양산교육지원청 사송중/금송중/증산중	양주중/웅상중 웅상여중/서창중	원동중(준벽지)		
	통영					도산중/통영중앙중 충무중/충무여중 통영여중/통영중 통영교육지원청	산양중	한산중 사랑중 육지중 (도서)	
	거창					거창중/거창여중 거창교육지원청	가조중/용양중 거창중고제분교장/ 거창중신원분교장 (2020.2.29.까지) /거창덕유중(준벽지)		
	고성			영천중/상리중 회화중	고성동중/고성여중 고성중/고성교육지원청	하일중/동해중	소가야중		
	남해					설천중/남해중 남해여중 남해교육지원청	꽃내중 미조중(준벽지)		
	산청			단성중	신통중/덕산중 산청교육지원청 산청중	산청중 (2019.3.1.~2021.2.28)			
	의령				의령중/의령교육지원청	신반중			
	창녕				영산중/부곡중	창녕중/창녕교육지원청			
	하동				진교중/옥중중 횡천중/양보중	하동중앙중 금남중/하동교육지원청	악양중/청암중 화개중(준벽지) 한다사중		
	함안			함안중/호암중 함안교육지원청	법수중(2020.2.29. 까지)				
	함양					함양중/함양여중 수동중/함양교육지원청	서상중 마천중(벽지) 조계중		
	합천			삼가중		합천중/합천교육지원청	야로중(준벽지)		



<별표1-2> 급지별 고등학교/특수학교 명단(전보 선택 자료)

구역	지역	급지						
		가 (4.0)	나 (4.5)	다 (5.0)	라 (5.5)	마 (6.0)	바 (6.5)	사 (7.0)
갑	진주	나 이외교	경남과학고 경남체육고 대곡고/진서고 진주해광					
	창원	나 이외교 창원천광	창원북면고					
을	마산		다 이외교 경남해림, 창원자유학교	태봉고				
	진해			진해고/진해여고	웅천고/진해용원고			
	김해		진영고/장유고 김해삼문고 진영제일고 김해대청고 김해외국어고 김해울하교 김해수남고	나 이외교 김해은혜				
병	거제					거제중앙고/거제공고 거제제일고/거제여상 연초고/거제상문고/ 거제옥포고	경남산업고	
	사천		경남자영고	곤양고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밀양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밀양영화고/밀양아리술 /특수교육원	밀양고/밀양여고		
	양산				양산고/양산남부고 물금고/범어고/중산고/ 양산인공지능고/사송고	웅상고/서창고/양산회 망		
	통영					통영고/충무고 통영여고/통영잠포		
	거창					아림고/거창나래학교 거창여고/거창연극고	거창송강기고	
	고성				고성중앙고 경남항공고	경남고성음악고		
	남해					남해정보산업고 남해제일고 경남해양과학고 남해보물섬고		
	산청			단성고	산청고/신등고 덕산고			
	의령				의령고 의령은광	신반정보고		
	창녕				영산고	창녕슈퍼텍고		
	하동				진교고/옥종고	하동고/금남고		
	함안			함안고				
	함양					함양고/함양제일고 안의고	서상고	
	합천			삼가고		합천고	초계고 야로고(준벽지)	

* 학교 외 교육기관의 급지(파견교사 등)

- 도교육청: 가급지
- 교육지원청: 각 지원청에서 최단거리 중학교의 급지
-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험원, 경남수학문화관, 진산분원, 칠북분원: 각 기관에서 최단거리 학교(중/고)의 급지 <신설 2019.7.8.>
- 덕유학생교육원, 경남학생교육원, 남해분원, 낙동강학생교육원: 사급지
- 진양고: 가급지(2017.3.1.부터 시행)



<별표2-1> 근무경력점 평정 기준표 (2007.3.1.~2027.2.28.)

급지	학교	점수
가	•진주: 나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16.3 문산중), (17.3 진양고), (20.3 대곡중), (24.3 진주교육지원청), (26.3 금곡중) •창원: 나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09.3 도계중), (11.3 창원과학고), 창원교육지원청	4.0
나	•김해: 한일중, 김해대동중, 진영중, {21.3 진영장등중(진영여중 21.2)}, 월산중, 능동중, 관동중, 내덕중, (10.3 율하중), (11.3 대청중), (11.3 진영고, 진영제일고, 장유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외국어고, 김해윌하고), (16.3 수남중), (17.3 김해수남고), (20.3 김해모산중), (22.3 김해서중) •마산: 다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18.3 창원자유학교) •사천: 사천중, 사천여중, 경남자영고 •진주: 반성중, (대곡중 20.2), (금곡중 26.2), 명석중, 지수중, (문산중 16.2), 진서중, 진서고, 경남과학고, 경남체육고, 대곡고, 진주해광학교, (10.3 진양고), (14.3 경남꿈키움중학교), (진양고 17.2), (진주교육지원청 24.2) •창원: 창덕중, 창북중, 양곡중, (09.3 창원동중), (16.3 감계중), (23.3 창원북면고), (26.3 복면중)	4.5
다	•김해: 나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09.3 활천중), (11.3 김해제일고), (12.3 김해임호고), (15.3 구산고), {22.3 김해금곡고(금곡무지개고 22.2)}, (김해서중 22.2.) •마산: 진전중, {19.3 구산중구남분교장(구남중 19.2)}, (구남중구산분교장 19.2), (10.3 태봉고) •사천: 곤양중, 서포중, 곤양고 •진해: 진해중, 진해여중, 동진중, 동진여중, 석동중, 진해고, 진해여고, {안골포중, (09.3.용원중) 10.2}, (17.3 진해냉천중)	5.0
라	•고성: 영천중, (영천중영현분교장 08.2), (상리중 16.2), (회화중 16.2) •산청: 단성중, (단성중신안분교장 08.2), 단성고 •의령: (의령중, (의령중화정분교장 08.2), 의령고, (경남은광학교 10.2)) •함안: 함안중, (10.3 호암중), 함안고, •합천: (16.3 삼가중), (16.3 삼가고)	5.5
마	•밀양: (상남중 15.8), (초동중 15.8), 무안중, {19.3 한국나노마이스터고(밀양전자고 19.2 (밀양공고 09.2))}, (17.3 밀양영화고), (22.3 밀양아리솔학교) •사천: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14.2) •양산: 양산중, 삼성중, 양산중앙중, 신주중, 범어중, (18.3 물금중), 양산고, 양산남부고, 물금고, (11.3 범어고), (20.3 금오중), (23.3 증산고), (23.3 사송중), (25.3 금송중, 증산중, 양산인공지능고), (26.3 사송고) •진해: 웅천고(진해제일고 12.2), {10.3 진해용원고, 안골포중, (09.3 용원중)}, (19.3 진해신항중), (21.3 웅천중) •통영: (도산중, 통영잠포학교 14.2)	6.0
바	•거제: 신현중, 거제고현중, 연초중, 거제중앙중, 거제제일중, 성포중, 계통중, (10.3 수월중), (13.3 거제장평중), 거제중앙고, 거제제일고, 거제공고, 거제여고(08.3 거제여상 13.2), (11.3 연초고), (13.3 거제상문고), (16.3 옥포중), (16.3 옥포성지중), (16.3 거제옥포고), (26.3 거제상문중) •밀양: 밀양중, 밀양여중, 밀양고, 밀양여고 •사천: (14.3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양산: 양주중, 웅상중, 웅상여중, 서창중, 웅상고, 서창고, (25.3.,양산희망학교) •통영: (14.3 도산중, 통영잠포학교), (산양중 14.2), 통영중, 통영여중, 충무중, 충무여중, 통영고, 충무고, 통영여고, (10.3 통영중앙중)	6.5
사	•거제: 하청중, 동부중, 지세포중(14.1 준벽지), (옥포중 16.2), (옥포성지중 16.2), 경남산업고(거제중고 07.2), (거제옥포고 16.2), •밀양: (12.3 밀양중청도분교장 15.8 (청도중 12.2)), {상동중(13.3 통합) 15.8}, 미리벌중(15.9), 미리벌중(16.1 준벽지) •양산: 원동중(14.1 준벽지) •통영: (14.3 산양중)	7.0

* 학교이력 읽기: 점두 연월은‘부터’로 읽고, 점미 연월은‘까지’로 읽음

* 사례) 산양중의 경우, 14년 2월까지의 마감지였으나, 14년 3월부터 마감지로 조정되었음



<별표2-2> 근무경력점 평정 기준표 (2002.3.1.~2007.2.28.)

급지	학교	점수
가	• 진주: 나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 창원: 나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4.0
나	• 김해: 한얼중, 김해대동중, 진영장동중, 월산중, 능동중, 관동중, 내덕중, 진영고, 진영제일고, 장유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외국어고 • 마산: 다급지 해당 학교를 제외한 학교 • 사천: 사천중, 사천여중, 경남자영고 • 진주: 반성중, 대곡중, 금곡중, 명석중, 지수중, 문산중, 진서중고, 경남과학고, 경남체고, 대곡고, 진주해광학교 • 창원: 창덕중, 창북중, 양곡중	4.5
다	• 김해: 한얼중, 김해대동중, 진영여중, 월산중, 능동중, 관동중, 내덕중, 진영고, 진영제일고, 장유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외국어고 제외, 김해생명과학고(김해농업고 06.2) • 마산: 진전중, 구남중, 구남중구산분교장, 내서중, 삼계중, 호계중 • 사천: 곤양중, 서포중, 곤양고 • 진해: 진해중, 진해여중, 동진중, 동진여중, 석동중, 진해고, 진해여고	5.0
	• 고성: 영천중, 영천중영현분교장, 상리중, 회화중 • 산청: 단성중, 단성중신안분교장, 단성고 • 의령: 의령중, 의령중화정분교장, 의령고, 경남은광학교 • 함안: 함안중, 함안고 • 함천: 삼가중, 삼가고	
라	• 밀양: 상남중, 초동중, 무안중, 밀양공고 • 사천: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 양산: 양산중, 삼성중, 양산중앙중, 신주중, 양산고, 양산남부고, 양산물금고 • 진해: 안골포중, 진해제일고, 진해용원고 • 통영: 통영중, 통영여중, 충무중, 충무여중, 도산중, 통영고, 충무고, 통영여고	5.5
	• 고성: 고성중, 고성여중, 고성동중, (회화중구만분교장 05.2), 고성중앙고, 경남항공고 • 산청: 산청중, 덕산중, 신등중, 산청고, 덕산고, 신등고 • 창녕: 영산중, 부곡중, 계성중, 영산고 • 하동: 진교중, 옥중중, 옥중중북천분교장, 금남중, 횡천중, 양보중, 진교고, 옥중고, 금남고 • 함안: 법수중 • 함천: 쌍백중, 함천중, 함천고	
마	• 거제: 신현중, 거제고현중, 연초중, 거제중앙중, 거제제일중, 성포중, 계룡중, 거제중앙고, 거제제일고, 거제공고, 거제여상 • 밀양: 밀양중, 밀양여중, 밀양고, 밀양여고 • 양산: 양주중, 웅상중, 웅상여중, 서창중, 웅상고 • 통영: 산양중	6.0
	• 거창: 거창중, 거창여중, 마리중, 위천중, 가조중, 웅양중, 거창여고, 거창산업과학고, 가조익천고 • 고성: 하일중, 고성중삼산분교장 • 남해: 고현중, 설천중, 남해중, 남해여중, 남해제일고, 남해정보산업고 • 산청: 생초중, 생초고 • 의령: 신반중, 신반중의동분교장, 신반정보고 • 창녕: 창녕중, (창녕제일고 18.2) • 하동: 하동중앙중, 하동고 • 함양: 함양중, 함양여중, 수동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안의고 • 함천: 초계중, 초계고(초계중합고 06.2)	
바	• 거제: 하청중, 동부중, 지세포중, 옥포중, 거제중고, 거제옥포고 • 밀양: 청도중, 상동중 • 양산: 원동중	6.5
	• 거창: 가조중가북분교장, 거창중고제분교장, 신원중 • 고성: 동해중 • 남해: 남수중, 미조중, 물건중, 경남해양과학고 • 산청: 차황중, 경호중, 경호고 • 하동: 악양중, 화개중, 청암중(벽지) • 함양: 서상중, 서상고, 마천중(벽지) • 함천: 함천중봉산분교장, 쌍책중, 야로중, 야로고, 덕곡중(벽지)	
사	• 옥지중(도서), 사랑중(도서), 한산중(도서)	7.0

종별	항목: 시점, 요건, 제한 등	점수 (1년)	적용
1. 근무경력부가점	평정기간 중 최근 1년 초과 5년까지(2027.3.1.자 전보 신청자부터 적용) 근무경력 2년 3년 4년 5년 부가점 1점 3점 6점 9점	1.00 2.00 3.00 3.00	누가
2. 담임교사 경력 등	① 담임교사: 2010.2.28. 이전, 휴직 기간은 제외 ② 담임교사: 2010.3.1. 이후, 휴직 기간은 제외 ③ 2과목이상 지도교사: 복수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2과목 이상 지도한 교사 ④ 선수육성: 2011.3.1.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중)/전국체육대회(고)에, 출전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 단, 담임교사 경력과 <별표 4>의 동일경력 of 상장 및 표창 이중적용 불가 ⑤ 부장교사: 2015.3.1.이후, 휴직기간은 제외. 담임경력, 선수육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인정(2019.3.1. 이후) 2021.3.1. 이후, 연 0.4점 <개정 2021.3.1.실적부터> ⑥ 교육과정내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 2022.3.1.이후, 휴직기간은 제외. 일과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에 한함. 방과후, 주말시간 공동교육과정 수업운영 교사는 적용 불가. 담임, 부장교사 경력과 중복될 경우 각각 인정 <신설 2022.3.1.실적부터><경남온라인학교 제외> ⑦ 학교폭력책임교사: 2027.3.1. 이후, 학교별 1명에 한함	0.20 0.30 0.20 0.25 0.30 0.40 0.20 0.30	누가
3. 겸임/겸직 경력	통합운영학교 겸임 포함 ① 1개 학교 겸임 ② 2개 학교 겸임: 2010.3.1. 이후 ③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겸직: 2004.3.1. 이후, 상한점 0.60	0.50 0.70 0.20	누가
4. 연구·시범학교 경력 등	실험학교, 우수학교, 교육방송, 평생/사회교육 지역중심학교 포함 ① 교육부장관/교육감 지정: 2010.2.28. 이전, 가산점 인정 교사 ② 교육장 지정: 2004.3.1. 이후 2010.2.28. 이전, 가산점 인정 교사 ③ 교육감 지정 교육실습협력학교: 2026.3.1.이후, 전보 가산점 인정 교사(승진 가산점 인정 교사 제외)	0.50 0.50 0.50	누가
5. 연수협력학교 경력	2012.3.1. 이후, 교당 매년 2명 이내	0.30	누가
6. 공동 실습소 경력	2004.3.1.이후, 농업계 전문교과 교사 2018.3.1.이후, 공업계 전문교과 교사<신설 2018.3.1.실적부터>	0.25	누가
7. 기숙사 사감 경력	① 2012.3.1. 이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숙사 사감, 교당 매년 7명 이내. 상한점 0.60 ② 2018.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기숙사 사감,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3장제6조.⑩항5호>에 따른다. <신설 2018.3.1.실적부터> ③ 2023.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숙사 사감,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3장제6조.⑩항5호>에 따른다. <신설 2023.3.1.실적부터>	0.20	누가
8. 특수학교 경력	특수학교에 근무한 보건의료 ① 2014.3.1. ~ 2026.2.28. ② 2027.3.1. 이후	0.20 0.30	누가
9. 각종학교 경력	2016.3.1.부터 각종학교(경남꿈키움중학교) 근무한 교사 2018.3.1.부터 각종학교(경남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 근무한 교사 2019.3.1.부터 각종학교(창원예술학교) 근무한 교사 2020.3.1.부터 각종학교(김해금곡고(금곡무지개고), 거창연극고) 근무한 교사 2021.3.1.부터 각종학교(남해보물섬고) 근무한 교사 2023.3.1.부터 각종학교(경남온라인학교) 근무한 교사	0.20	누가
10. 행복(니눔)학교 경력	행복학교 및 행복니눔학교 지정 이후 근무 3년차부터 최대 3년, 2021.3.1.이후 통산 2년을 초과하는 경력(연 0.2점, 최대 0.6점)<신설 2020.7.13.>	0.20	누가

- * 대상자별로 평정기간이 다름에 유의할 것
* 경력기간의 장단을 반영하여 평정
-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 월수환산점(연 평정점을 12로 나눈 값을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에 근무 월수를 곱한 값. 15일 이상은 1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 누가: 평정기간 내에 누가 적용



<별표4> 가산점 평정 기준표

종별	항목: 시점, 요건, 제한 등	점수	적용																																			
1. 표창	① 생활지도 표창: 2005.3.1. 이후, 교육감 표창 ② 교육일반 표창: 교육감/장관/국무총리/대통령/모범공무원 표창 등 ③ 대학교총장 표창: 2010.3.1. 이후 ④ 직속기관장 표창: 2009.3.1. 이후 ⑤ 교육장 표창: 2010.2.28. 이전	1.50 1.00 0.70 0.70 0.70	택일																																			
2. 상장	① 전국소년체육대회(중)/전국체육대회(고): 입상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 ② 교육감상/장관상/국무총리상/대통령상 ③ 교육장상: 2010.2.28. 이전	0.75 0.50 0.25	택일 누가																																			
3. 학습지도	교수학습지도연구대회 입상/특수교육수업연구교사발표대회<신설 2018.3.1. 실적부터>	0.75	누가																																			
4. 대회지도	교육감/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특허청장이 주최한 다음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을 지도한 실적으로 교육감/장관/국무총리/대통령 표창을 받은 교사 - 경시대회(논술/수학/과학/외국어/정보올림피아드/영어토론대회) - 학예대회(중등종합학예발표대회) - 체육대회(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 과학대회(경남, 전국)(과학전람회/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청소년과학탐구대회/학생과학탐구올림피아드/학생창의력챌린지대회) 단, 2014.3.1.이후 실적부터 적용하고, 표창과 중복 적용 불가(중복 시 선택) - 과학대회(경남학생창의력페스티벌대회, 경남과학발명창의성대회)<신설 2018.3.1.실적부터>	0.50	택일 누가																																			
5. 기술자격증	교과지도에 직접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평정기간에 취득한 것 ①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사1/2급, 산업기사, 해기사(1~6급) 자격증 ② 기능사, 기능사1/2급, 서비스계(1,2,3급, 1단 이상) 자격증 ③ 정보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분야 중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④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0.50	택일																																			
6. 영어능력시험	모든 교사, 평정기간에 취득한 것,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유효할 것<개정 2020.7.13.> <table><tr><th>종류</th><th>만점</th><th>성적</th><th>점수</th><th>성적</th><th>점수</th></tr><tr><td>TSE-P</td><td>60</td><td>45점 이상 50점 미만</td><td>0.50</td><td>50점 이상</td><td>1.00</td></tr><tr><td>TOEFL(IBT)</td><td>120</td><td>80점 이상 92점 미만</td><td>0.50</td><td>92점 이상</td><td>1.00</td></tr><tr><td>TOEIC</td><td>990</td><td>700점 이상 800점 미만</td><td>0.50</td><td>800점 이상</td><td>1.00</td></tr><tr><td rowspan="2">TEPS</td><td>990</td><td>602점 이상 712점 미만</td><td>0.50</td><td>712점 이상</td><td>1.00</td></tr><tr><td>600</td><td>328점 이상 393점 미만</td><td>0.50</td><td>393점 이상</td><td>1.00</td></tr></table>	종류	만점	성적	점수	성적	점수	TSE-P	60	45점 이상 50점 미만	0.50	50점 이상	1.00	TOEFL(IBT)	120	80점 이상 92점 미만	0.50	92점 이상	1.00	TOEIC	990	700점 이상 800점 미만	0.50	800점 이상	1.00	TEPS	990	602점 이상 712점 미만	0.50	712점 이상	1.00	600	328점 이상 393점 미만	0.50	393점 이상	1.00	1.00 또는 0.50	택일
종류	만점	성적	점수	성적	점수																																	
TSE-P	60	45점 이상 50점 미만	0.50	50점 이상	1.00																																	
TOEFL(IBT)	120	80점 이상 92점 미만	0.50	92점 이상	1.00																																	
TOEIC	990	700점 이상 800점 미만	0.50	800점 이상	1.00																																	
TEPS	990	602점 이상 712점 미만	0.50	712점 이상	1.00																																	
	600	328점 이상 393점 미만	0.50	393점 이상	1.00																																	
7. TEE 인증서	영어과 교사, 2012.3.1. 이후, 평정기간에 취득한 것 ① 영어수업능력 우수교사(하급) 인증서 ② 영어수업능력 특별교사(상급) 인증서	0.50 0.50	택일																																			
8. 우대조건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부양자(단, 배우자 및 1대의 직계혈족에 한함) ②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③ 부모 봉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사실상 1년 이상 봉양하는 경우 ④ 자녀 양육: <개정 2021.7.12.>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양육하는 경우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2인 양육하는 경우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1인 양육하는 경우 ⑤ 부부교원: 배우자의 근무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한함 ⑥ 만 55세 이상인 자: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자 ⑦ 순직교원: 순직한 교원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1.00 1.00 0.50 0.50 1.00 0.60 0.30 0.50 0.50 1.00	택일																																			
9. 근무실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의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2016.3.1.부터 적용 <개정 2020.7.13.>	0.5	현임교 1회																																			

* 1, 2, 4: 동일 실적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동일 실적으로 표창과 상장을 받은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2, 4: 택일 누가: 동일 학년도 중복될 경우 택일하여, 평정기간 내에 누가 적용

* 7. TEE: 우수교사(하급) 인증서 취득 0.5점 인정, 전보 후 특별교사(상급) 인증서 취득 0.5점 인정

* 8. 우대 조건 ①, ②, ③: 동일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등재된 자, 중등교육과-50764(2008.12.23.)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표창, 상장, 자격증, 인증서는 내신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현재내신에 평정하고, 익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전보된 학교에서 차기내신에 평정한다.<인사관리기준 제21조 ③항>



중 등(특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특수교사의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금지 및 근무연한)

- ①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근무는 통산한다.
(2005. 3. 1.부터 적용)
- ② 1997. 3. 1. 이전의 특수학교 및 급지 간 근무 경력은 계속 근무로 본다.

제2장 기간제 교사 임용

제3조(기간제 교사의 임용)

기간제 교사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전 직

제4조(교원의 전직 임용)

- ① 중등학교 교원과 특수학교 교원이 상호 전직할 때는 전직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희망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전직 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
- ② 교원의 특수학교 전임후보자 서열명부는 중등교사 전보 점수 기준에 의한다.
- ③ <삭제 2010.3.1.>
- ④ <삭제 2010.3.1.>

제4장 전 보

제5조(교사 전보)

특수학교간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전보 유예)

- 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제27조 ②, ⑧항에 준한다.
- ② 교사의 장애(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사정상 타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장기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동일교 근무연한이 만기인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담당부장교사는 매 1년씩 3년간 전보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전공과 전문요원교사의 전보 우선)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요원교사 배치를 요구할 경우 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특수교사 자격 유무 관계없음) 2인 이내에서 우선 배치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제8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특수교육 담당전문직 전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기관장이 전보 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9조(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의 준용)

- ①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2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적용 범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3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전보 시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2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비정기 전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7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⑥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0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승진 및 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⑦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및 특수교육전문직의 전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⑧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제30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⑨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7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전보 서열명부 작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⑩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교사·교감의 전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⑪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0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및 교장의 전보의 유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⑫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4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국·공립학교간 교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⑬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5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시·도간 교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6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파견 근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⑮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25조의 규정은 특수학교 교원인사관리기준의 초빙 교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0.3.1.>

<별표1> 가산점평정표 : 중등인사 '교육활동경력점 평정 기준표(39쪽), 가산점 평정 기준표(40쪽)'에 준함

<별표2> 가산점평정 및 교육활동 경력점표 : 특수교사만 별도로 추가하여 평정함

종별	항목	가산점	비고
가산점 평정	1.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입상유공자 (2008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0.5점/년	* 5년간 누가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 항목당 상한점 2.0
교육활동 경력점	2. 특수교육원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 근무자	2점/년	
	3. 순회(파견)교사	0.5점/6개월	* 순회(파견)학급 담당교사 * 상한점 2점(삭제)

부 칙

(2000. 12. 17. 초등13060-2221호)

제1조(시행일)

이 인사관리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94. 2. 28이전 특수학교 전출·입된 교감, 교사는 인사 급지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시행안 예고)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표2>의 시행안과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12100-28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안 예고)

제15조(전보서열명부 작성)제④항의 근무성적점 반영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학년도부터 시행함을 예고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12100-29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12110-30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실적의 4.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 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② <표2> 연구실적에 영어능력 시험성적을 추가하고 영어능력 시험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TOEFL PBT 473이상, CBT 150이상
 - TOEIC 510이상
 - TEPS 419이상(990점 만점)/ 222이상(600점 만점) <개정 2019.7.8.>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다음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4장 제11조 ③ 삭제
- ② 제4장 제11조 ④ 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특수학교 교원이 특수학교에 4년 이상 근무하고 중등학교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제5장 제14조 ② 학교간의 전보는 동일교 근무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사급지 근무연한은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13조, 제20조에 준한다.
- ④ 제5장 제16조 ② 특수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특수학급 교사의 전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13조, 14조에 준하여 전보한다.
- ⑤ 제6장 제21조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특수학교로 전입될 자는 국립학교장이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고, 공립특수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진출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 ⑥ <표2> 가산점평정표(특수) '근무실적'
 1.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근무자에게 0.5점을 부여한다.
 4.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입상 유공자 1.0점을 부여한다.
 5. 순회(파견)교사(6개월마다) 0.5점을 부여한다.(상한점 2점)
- ⑦ <표2> 가산점평정표(특수) '연수실적'
 1. 자율연수 실적(자생연구단체 연수포함) 60시간 0.25점을 삭제한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시행세칙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세부지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2009. 10. 29. 인사위-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시행세칙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세부지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2> 가산점평정표(특수) : 특수교사만 별도로 추가하여 평정함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1.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입상유공자 (2008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상 0.5점/년 은상 0.4점/년 동상 0.3점/년	* 5년간 누가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 항목당 상한점 2.0
2.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 입상유공자		
3.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입상유공자		
4.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자	2점/년	

제10조(특수교육지원센터 전보)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보 시 전보우선권을 부여한다.

(2010.3.1.이후) <개정 2018.2.28.이전 실적>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8.이전 실적>

세부지침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보

가. 교육지원청별 초등, 중등특수교사의 배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나. 2010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8. 인사위-2019-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0. 인사위-2023-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지침)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시행세칙은 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세부지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2> 가산점평정 및 교육활동 경력점표(특수): 특수교사만 별도로 추가하여 평정함

종별	항목	가산점	비고
가산점 평정	1.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입상유공자 (2008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0.5점/년	* 5년간 누가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 항목당 상한점 2.0
	2. 특수교육원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 근무자	2점/년	
교육활동 경력점	3. 순회(파견)교사	0.5점/6개월	* 순회(파견)학급 담당교사 * 상한점 2점(삭제)

부 칙

(2024. 7. 8. 인사위-2024-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인사위-2025-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 등(영양)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내 유·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21.10.6.〉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군의 인사관리 방침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 내 1·2·3식 급식학교 간의 순환전보 및 통합 시·군의 경우 읍·면·동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일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영양교사 전보는 통합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행한다.
단, 2008년 3월 1일자 초·중등·특수 임용자는 제외하되 희망자는 포함한다. 〈개정 2016.5.25.〉

제3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비정기 전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당해학교에 재직 시 3회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2. 동일교에 근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부부 교직원<개정 2022.7.11.>
- ② ①항 2~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6.5.25.〉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제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제7조(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

- ①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도 영양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정한다.
- ②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제8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도 인사구역의 ‘가’, ‘나’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전 보

제9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급지별 근속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인사구역은 <표1>과 같다. 이 경우 현 근무 급지의 근속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근속연한 적용기준 : 현 급지 임용일)
<개정 2016.5.25.>
 1. ‘가’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8년으로 한다.
 2. ‘나’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5.>
 3. ‘다’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12년으로 한다.
 4. ‘가’, ‘나’ 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 <개정 2017.7.10.>
 5. 동일지역 ‘다’ 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단, 동일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 <개정 2017.7.10., 2018.7.17.>
- ②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당해 급지에서 1회에 한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서 2년간 전보유예가 가능하고, 당해 급지에서 2회 이상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9.7.8.>
또한,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연한은 4년으로 한다. (2028.3.1. 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5.6.23.>
- ③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근무기간은 1회(최대 4년, 동일교 근무실적에 한함)에 한하여 당해 급지의 통산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0.3.1. 이후 실적)<개정 2011.1.31.> <개정 2019.7.8.> <개정 2020.7.13.> <개정 2025.6.23.>
 1. 1일 3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0.3.1. 이후 실적부터
 2. 1일 2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2.3.1. 이후 실적부터
- ④ 경상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학교로 복귀 시 해당 급지 근무 연한을 재산정한다.(파견근무 전 근무실적 당해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신설 2022.7.11.>

제10조(정기 전보)

- ①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연한은 4년으로 하고, 현임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유예자 및 급지 만기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개정 2016.5.25.>
 1. 유예년수가 오래된 자



2.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자 <개정 2017.7.10.>
3. 생년월일이 늦은 자
- ③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 <개정 2017.7.10.>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교에 전보하지 않는다. 단, 현재 동일교에 근무중인 자는 이를 해소하도록 전보하며, 해당교사의 평정기간은 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4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1.20.>
1. 부부교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의 교사
2.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 ⑤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경우 침해학생이 전학한 학교에 전보하지 않는다.(단, 피해교원이 '동일교 미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12.>

제11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영양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고·특수학교 구분 없이 인사구역별로 통합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6.5.25.> <개정 2017.7.10.>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단, '나', '다'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시·군의 급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 급지에 준한다. <개정 2016.5.25.> <개정 2022.7.11.>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사구역 '라'급지 경력점을 부여한다.<신설 2024.7.8.>

경력점 \ 급 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2017.3.1.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 <개정 2016.5.25.>
- ③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며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④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우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2017.3.1.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 <개정 2016.5.25.> <개정 2025.6.23.>

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 상위자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⑥ 전보 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2조(전보의 특례)

① 영양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다음 순위에 의하여 우선 전보한다. <개정 2016.5.25.>

1. 전보내신자 중 총점이 높은 자
2. 해당 인사구역 장기 근무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1.10.24. 초등> <신설 2014.3.1. 중등> <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1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 11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전보의 유예)

① 지역 근무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1.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주무교사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영양교사<개정 2016.5.25.>
2.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
3.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사<신설 2018.7.17.>



② 금지 만기자가 전보할 수 없을 경우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제4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14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 ‘나’ 금지 근무자는 ‘가’, ‘나’ 금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4조(타시·도 간 교류)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개정 2018.7.17.> <개정 2019.7.8.> ○ 국가유공자 등 및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전출희망 시·도에 부양하여야 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부양해 줄 가족이 전출희망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 부양자, 부양해야 하는 자 : 배우자, 1대의 존·비속 <개정 2016.5.25.>
2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 <개정 2019.7.8.> ○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시·도에 3년 이상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개정 2016.5.25.>
3 순위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② 교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07. 01. 19. 인사위-133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0조 ① <표 1> 인사급지 구역의 진해시(웅동, 웅천지역), 김해시(면)지역을 ‘나’ 급지로 적용. 2010.3.1.실적부터
- ② 제21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 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u>1년 이상</u>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③ 제10조③ 1일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당해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0.3.1. 이후 실적부터
- ④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표창) :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 ⑤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근무실적) :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 (1년마다 0.3점). 2010.3.1. 이후 실적부터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인사위-1427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9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1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비고
근무 실적 (전)	3. <u>2년간</u>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3.1.이후 실적) ※ 분교순회근무 포함 <개정 2017.7.10.>	0.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8. <u>2년간</u>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0.1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무 실적 (후)	3.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3.1.이후 실적) ※ 분교순회근무 포함 <개정 2017.7.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0. 인사위-2019-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6. 인사위-2021-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0. 인사위-2023-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8. 인사위-2024-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인사위-2025-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인 사 구 역		동일교 근속연한	급지별 근속연한
급지	인 사 구 역		
가	창원시(창원), 창원시(마산), 진주시	4 년	8 년
나	창원시(진해),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동)	4 년	10 년
다	창원시(진해구 웅동, 웅천지역, 2010.02.28까지), 김해시(면, 2010.02.28까지), 통영시(동), 밀양시, 양산시(면), 의령군, 함안 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 년	12년 (동일지역 근속연한)
라	거제시, 통영시(면),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 「면」 은 「읍」 지역을 포함한다.	4 년	
○‘가’,‘나’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 <개정 2017.7.10.> ○ 동일지역‘다’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 (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 <개정 2017.7.10., 2018.7.17.> ○‘라’급지 근속연한은 삭제한다.(2018.3.1.이후) <개정 2017.7.10.>			



<표 2>

가산점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비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 이상(타 부처 장관 표창 포함),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창 포함)<개정 2016.5.25.><개정 2021.7.12.>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4. 교육감상, 타부처 장관상(2021.3.1. 이후 실적) <개정 2020.7.13.>	1.0 0.7 0.7 0.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 무 실 적	1. 1일3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개정 2016.5.25.> 2. 1일2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개정 2016.5.25.> - 2025.2.28. 이전 실적 - 2025.3.1. 이후 실적부터<개정 2024.7.8.> 3.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 ※ 분교순회근무 포함<개정 2017.7.10.> - 2018.2.28. 이전 실적 2년간 적용 - 2018.3.1. 이후 실적 4년간 적용<개정 2018.7.17.> <개정 2025.6.23.>	0.25 0.125 0.2 0.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4. 도서·벽지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0.5	
	5.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 학교 근무자(6개월마다)<개정 2016.5.25.>	0.5	
	6.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및 교육실습 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개정 2016.5.25.>	0.25	
	7.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2010.3.1. 이후 실적) <개정 2016.5.25.>(2021.3.1. 전보부터 4년간 실적 적용)<개정 2018.7.17.> <개정 2025.6.23.>	0.15	
	8.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 육과정운영 지역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1.3.1. 이후 실적부터 2017.2.28까지 실적)<개정 2016.5.25.> 9. 2년간 대규모학교 근무실적(6개월마다)<신설 2017.7.10.>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 - 2018.3.1.~2025.2.28. 실적 - 2025.3.1.이후 실적부터 <개정 2024.7.8.> ○ 43학급 이상 근무자 - 2018.3.1.~2025.2.28. 실적 - 2025.3.1.이후 실적부터 <개정 2024.7.8.> ※ 학급수에 병설유치원 학급 수 포함(2022.3.1.이후 실적부터)<개정 2021.7.12.>	0.125 0.5 0.75 0.75 1.0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10. 청렴도향상에 기여한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현임교 1회만 인정)<신설 2015.5.15.><개정 2020.7.13.>	0.5	2016.3.1.실적부터 적용
	11. 경상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근무(6개월마다) <신설 2021.7.12.>	0.5	2021.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비고
연구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발표자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개정 2019.7.8.>	1.0 0.5 0.5 0.2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 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서취득자<개정 2016.5.25.>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 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 이상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택일 적용 <개정 2019.7.8.>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임용전 자격 취득 포함)<신설 2016.5.25.>	0.3	
우우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7.7.10.> 4. 장애자(1년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6.5.25.><개정 2017.7.10.>	1.0 0.5 0.5 1.0	택일 적용 <개정 2019.7.8.>
	5. 만 55세 이상인 교사	1.0	<개정 2019.7.8.> <개정 2021.7.12.>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6~8 중복 불가 <개정 2017.7.10.>
	7. 자녀가 2명인 교사 8. 자녀가 1명인 교사(2026.3.1. 전보부터 적용)	0.5 0.25	<개정 2021.7.12.> <개정 2024.7.8.>



중 등(전문상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신규 임용 및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3.〉

제3조(전보의 시기)

- ①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기 도중의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비 정기 전보)

중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32조의 규정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비정기 전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을 정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6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제7조(신규 전문상담교사의 배정과 임용)

- ① 전문상담(순회)교사 신규 채용 대상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 ②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신규 채용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 ③ 신규 채용자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근거지에 배치하며, 그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와 학기 중 또는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신규로 채용되는 자는 '나'급지 이하 지역에 배치한다(다만, 전문상담(순회) 교사의 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전 보

제8조(교육지원청·학교 급간 전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중학교, Wee센터)·고등학교의 급간 전보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개정 2016.5.25.〉 〈개정 2020.7.13.〉

제9조(인사 구역 및 근속 연한)

근속 근무 연한은 〈표 1〉과 같이 적용 한다.

- ① '가'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8년으로 한다.
- ② '나'급지 연한은 근속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0.〉 〈개정 2026.6.25.〉
- ③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은 해당지역 근무연한에서 제외한다.(2017.3.1. 근무자 부터) 〈신설 2016.5.25.〉 〈개정 2020.7.13.〉

제10조(정기 전보)

- ①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의 전보는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표 1〉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 ② '가' 급지에서 근속 8년, '나' 급지에서 근속 10년, '근무한 자'는 전보한다.
- ③ 모든 급지에서 관내 우선 전보를 인정한다. 〈개정 2023.7.10.〉 〈개정 2026.6.25.〉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교에 전보하지 않는다. 단, 현재 동일교에 근무중인 자는 이를 해소하도록 전보하며, 해당교사의 평정기간은 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1.20.〉
 1. 배우자나 직계혈족 관계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 〈개정 2021.7.12.〉
 2.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확정된 학교 〈신설 2019.7.8.〉 〈개정 2020.7.13.〉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경우 침해학생이 전학 또는 진학한 학교(단, 피해교원이 '동일교 미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7.12.〉

4. 학생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교 <신설 2021.7.12.>
5. 학생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교(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7.12.>
- ⑤ 정원 감축 대상 교사 선정은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6.25.>

제11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전문상담교사의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7.7.10.>
- ② 경력점은 현임기관 5년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표 3>과 같이 산출한다.
-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현임기관 5년간 근무 기간에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수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 ④ 전보 서열 명부는 1년 간 유효하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현임기관 경력점 상위자
 2. 생년월일 선 순위자 <개정 2017.7.10.>

제12조(전보의 유예)

근무 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
- ② 정기 인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년퇴임 해당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만기를 1년간 전보 유예할 수 있다.
 1. 다자녀(3명이상)를 둔 교사(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교사(병구역에 한함).

제4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13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4조 (타 시·도 간 교류)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표 1> 인사 구역 및 근무 연한(전문상담(순회)교사)(2025.3.1.부터)

인 사 구 역		동일기관 근무연한 (학교 또는 교육청)	급지별 근무연한 (지역만기)
급지	인사 구역		
가	창원시(창원), 진주시, 김해시	5년	8년
나	창원시(마산), 창원시(진해), 양산시, 밀양시	5년	10년
다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5년	
라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5년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 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소속 기관	1.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근무자(누가 적용함) <개정 2020.7.13.>	1.5	경력 조건표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근무(누가적용함)(2023.3.1. 실적부터) <개정 2022.7.11.>	2.0																																				
표창	1. 교육감/장관/국무총리/대통령/모범공무원 표창 등 (단, 생활지도 유공교원 교육감이상 표창 : 1.5점) <개정 2020.7.13.>	1.0	5년간 누가적용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0.7.13.>																																			
	2. 교육장 및 대학교총장 표창	0.7																																				
	3. 직속기관장 표창 <2021.3.1.이후 실적>	0.7																																				
근무 실적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교육실습 협력학교 가산점 인정 해당 교사[교육방송, 평생(사회)교육 지역중심학교 포함] (동일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21.7.12.>	0.5 (1년에)	현임교거양실적 누가적용																																			
	2. 영어 능력 각종 성적의 가산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위점수 한 개만 사용) <개정 2020.7.13.>	0.5 또는 1.0																																				
	<table><tr><th>종 류</th><th>만점</th><th>성 적</th><th>가산점</th><th>성 적</th><th>가산점</th></tr><tr><td>TSE-P</td><td>60</td><td>50점이상</td><td>1.00</td><td>45점이상 50점미만</td><td>0.5</td></tr><tr><td>TOEFL(IBT)</td><td>120</td><td>92점이상</td><td>1.00</td><td>80점이상 92점미만</td><td>0.5</td></tr><tr><td>TOEIC</td><td>990</td><td>800점이상</td><td>1.00</td><td>700점이상 800점미만</td><td>0.5</td></tr><tr><td rowspan="2">TEPS</td><td>990</td><td>712점이상</td><td>1.00</td><td>602점이상 712점미만</td><td>0.5</td></tr><tr><td>600</td><td>393점이상</td><td>1.00</td><td>328점이상 393점미만</td><td>0.5</td></tr></table>	종 류		만점	성 적	가산점	성 적	가산점	TSE-P	60	50점이상	1.00	45점이상 50점미만	0.5	TOEFL(IBT)	120	92점이상	1.00	80점이상 92점미만	0.5	TOEIC	990	800점이상	1.00	700점이상 800점미만	0.5	TEPS	990	712점이상	1.00	602점이상 712점미만	0.5	600	393점이상	1.00	328점이상 393점미만	0.5	
	종 류	만점		성 적	가산점	성 적	가산점																															
	TSE-P	60		50점이상	1.00	45점이상 50점미만	0.5																															
	TOEFL(IBT)	120		92점이상	1.00	80점이상 92점미만	0.5																															
	TOEIC	990		800점이상	1.00	700점이상 800점미만	0.5																															
	TEPS	990		712점이상	1.00	602점이상 712점미만	0.5																															
		600		393점이상	1.00	328점이상 393점미만	0.5																															
	3. 연구실적 상장(1년에 상위 1개만 적용) ○ 교육감 이상 상장 ○ 교육장 상장	0.5 0.25																																				
	4.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의 위반 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 2016.3.1.부터 적용 <개정 2020.7.13.>	0.5																																				
	5. 각종학교(경남꿈키움학교[2016.3.1.부터]),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2019.3.1.부터], 밀양영화고등학교[2024.3.1.부터], 거창연극고등학교[2024.3.1.]부터) 근무한 교사<개정 2024.7.8.>	0.2																																				
6. 기술자격증(교과지도에 직접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평정기간에 취득한 것) <신설 2022.3.1.실적부터> ①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사1/2급, 산업기사, 해기사(1~6급) 자격증 ② 기능사, 기능사1/2급, 서비스제(1,2,3급, 1단 이상) 자격증 ③ 정보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분야 중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④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⑤ 상담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직업상담 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0.5																																					
7. 담임교사 경력 등 <신설 2022.3.1.실적부터> ① 담임교사 ② 부장교사	0.3 0.4																																					
8.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숙사 사감,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3 장제6조⑩항5호>에 따른다. <신설 2022.3.1.실적부터>	0.2																																					
9. 특수학교경력: 2024.3.1. 이후 특수학교에 근무한 상담교사 <신설 2024.7.8.>	0.2																																					



우대 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	1.0	택일 적용
	2. 순직교원의 자녀 및 배우자, 자부	1.0	
	3. 부부교원(배우자의 근무지로 전보 희망할 경우)	0.5	
	4.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사실상 1년 이상 봉양하고 있는 자녀	0.5	
	5. 만 55세 이상인 교사	0.5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장애 정도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개정 2021.7.12.>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5	
	7. 자녀 양육: <개정 2021.7.12.>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양육하는 경우	1.0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2인 양육하는 경우	0.6	
	-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자녀를 1인 양육하는 경우	0.3	

*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8조, 제21조 ②, ③항의 규정은 전문상담(순회)교사 인사관리기준의 가산점 평정 중 우대조건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표 3> 전문상담(순회)교사 경력점 조건표 <2025.3.1.부터>

구분 월	‘가’급지(4점)	‘나’급지(5점)	‘다’급지(6점)	‘라’급지(7점)	교육(지원)청가산점(2점)
1	0.33	0.42	0.50	0.58	0.17
2	0.66	0.83	1.00	1.17	0.33
3	1.00	1.25	1.50	1.75	0.50
4	1.33	1.67	2.00	2.33	0.67
5	1.66	2.08	2.50	2.92	0.83
6	2.00	2.50	3.00	3.50	1.00
7	2.33	2.92	3.50	4.08	1.17
8	2.66	3.33	4.00	4.67	1.33
9	3.00	3.75	4.50	5.25	1.50
10	3.33	4.17	5.00	5.83	1.67
11	3.66	4.58	5.50	6.42	1.83
12(1년)	4.00	5.00	6.00	7.00	2.00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15. 인사위-1714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5. 인사위-1863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10. 인사위-2017-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7. 인사위-2018-0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8. 인사위-2019-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0. 인사위-2019-0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3. 인사위-2020-0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12. 인사위-2021-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0. 인사위-2023-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8. 인사위-2024-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인사위-2024-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25. 인사위-2026-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 등(교육전문직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교육 전문직원의 임용과 전보 및 전직에 관한 교육감 위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본 도의 초등·중등·유치원·특수교육 전문직에 적용한다.

제2장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3조(임용 대상)

-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승진 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에 의하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의 승진임용후보자명부작성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20.>
- ④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도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
- ⑤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교장, 교감, 교감승진후보자,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임용 절차)

- ① 임용후보자 추천
- ② 전형
- ③ 임용후보자명부 작성
- ④ 임용

제5조 (임용후보자 추천)

- ① 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사립학교 교원의 추천권자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임용후보자 추천은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직으로서의 인품과 자질을 갖추고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한 책임자를 추천한다. 다만, 초등은 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자(교육전문직원 경력자)가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다.
-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①항 승진 임용의 제한 자는 제외한다.
- ④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6조(전형)

- ① 교사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 방법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②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후보자가 교육전문직원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7조 제5항의 명부작성 방법에 의거 전형한다.

제7조(임용후보자명부 작성)

- ①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명부는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구분 작성한다.(사립교원 별도 작성)
- ②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는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③ 전 학년도 공개전형 합격자 중 미 임용자의 서열명부는 별도로 한다.
- ④ 공개전형 합격자로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기한(2년) 내에 임용되지 않은 자는 면접시험만 시행하고 별도로 명부를 작성한다.
- ⑤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후보자 중 전문직원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명부는 별도의 전직전형 성적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10.〉

- ⑥ 교감 및 교감승진후보자 중 전문직원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명부 작성에서의 동점자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1순위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2순위는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3순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4. 4순위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8조(교원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 ①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한다.
- ② 제7조 ③항에 해당되는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상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제외한다.
- ③ 과목별 교육전문직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에 필요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교장, 교감, 교감승진후보자, 전문직원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 ① 교장과 교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임용은 전직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진 서열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①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교육전문직원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은 ①항의 규정에 의하되, 초등의 경우 제5조의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를 우선 임용한다.

제10조(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은 제3조 ③항에 의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현직 교장과 원장은 공개경쟁시험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23.> <개정 2015.1.28.>

제11조(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국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코자 할 때는 국립학교장의 전직동의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임용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교육전문직원에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제12조(희망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근무실적 및 인사조직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장기근속자 전보)

- ①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2012. 3. 1자 이후 임용한 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 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 ② 〈삭제 2025.6.23.〉

제4장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제14조(전직)

- ①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작성한 전직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②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다만, 2012.3.1.이후 임용된 자는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 ③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도교육청의 과장(지역교육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3.〉



- ⑤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청의 과장(지역교육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 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3.>

제15조(전직후보자명부 작성)

- ①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교장 전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교장 전직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감 전직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부를 참고하여 임용한다.

항 목	구 분	배점	항 목	구 분	배점	비 고
총교육 경 력	30년 이상	3	학위 (동등급직위)	박사	3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28년 이상	2		석사	2	
	25년 이상	1	연구실적 (동등급직위)	전국단위	2	
현임지 경 력	4년 이상	6		도단위	1	
	3년 이상	5				
	2년 이상	4				
	1년 이상	3	표창 (동등급직위)	국무총리 이상	3	
상응직 경 력	4년 이상	4		장관	2	
	3년 이상	3		교육감	1	
	2년 이상	2				
	1년 이상	1				

제16조(교장 경력자의 우선 임용)

전직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교장 경력이 있는 자는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17조(장기근속 전문직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원으로 전직 임용(제청)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와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유예할 수 있다.(2026.9.1.자부터 적용) <개정 2026. 6. 25.>

부 칙

(2001. 11. 29. 인사위12100-28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4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3조 ④항의 내용을 200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육전문직의 임용 대상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전형서류 제출일 현재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현직 교사(1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자, 파견교사 포함)와 중등사립교원으로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합격한 자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6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3장 제13조의 내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2008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4장 제14조 제②항의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②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2년 이상인 교(원)감 경력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등교육과-43422, 2009.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전직)

- ②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2. 인사위-23913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8. 인사위-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0. 인사위-2019-07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0. 인사위-2023-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8. 인사위-2024-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인사위-2025-04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25. 인사위-2026-02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